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
2010.10.14 ( 목 14:00

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민병완

#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1. 발의자 : 정 현 의원(찬성자 7인)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0년 9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10월 8일

## 3. 제안 이유

- 도민이 경제생활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가.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의 개정(안 제5조제4항제4호)

나.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5조제4항제5호, 안 제5조제5항)

## 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